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

고용보험 사이트 ei.go.kr

첫째, 1번 온라인취업특강(STEP)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 듣기 둘째 2번 신어이저 이터네 시처음 클리하여 위무자(1, , 4)번 까지 2

둘째, 2번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원문자(1 ~ 6)번 까지 순차적으로 작성 및 선택

단, 빨간 도움말을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중으로 전송하여 주세요.



1. 구직활동내역 [상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문을 읽고 동의를 하셔야합니다]	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	보기 ~
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/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. 워크넷 바로가기	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*	구직활동 ✓ 구직활동
전체기간 중 구적활동이 있는 경 <mark>우가 있으신가요?</mark> 이 있음 이 없음	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	
2.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	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* (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)	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○ 전자우편
고로나 19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에 따라,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 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을 해야합니다.	재취업희망 유형	
교육자료 <mark>자체학습을 한 경우에는</mark> 아래의 과정에서 1 <mark>차 실업인정일 교육</mark> 을 선택한 뒤 세부내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을 작성하고, 첨부구비서류로 <mark>수강확인서</mark>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재취업희망 유형	 ✓ 상용근로자 □ 일용근로자 □ 예술인 □ 노무제공자 □ 지영업자 □ 기타프리랜서 등
교육동영상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에서 온라인취업특강을 선택한 뒤 검색버튼을 클릭하고 '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' 을 선택하 은로 같인취업특강 (STEP) 메뉴를 통해 이수 하였다면 (별도 첨부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)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. [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] [] [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] []	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의 위 적용됩니다. 노무제공자는 '보험설계사, 신용카드·대출모집인 화물차주, 건설기계종사자, 방과후강사, 퀵서비: 	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 전에 근무했던 일자리 유형이 인, 학습지교사, 방문교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기사, 방문판매원, 스기사, 대리운전기사가 해당합니다.
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? ex) 계좌제, 직업훈련, 부당해고 구제자,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 세부내역(훈련기관,과정명,기간 등)	(i) 임시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해 윈도우10의 경우, '이 페이지에서 추가 미 (이미 체크하였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, 사 임시저장이나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을	# 주시기 바랍니다. 베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' 에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. # 창에서 진행하세요.) -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(1577-7114, 2번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2021/10/15 / 1차실업인정 교육(STEP) 검색 과정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, 검색버튼, 과정 선택 + -	작성시 유의 사항	
작성시 유의 사항 •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•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반환 및 추가징수)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요 부정행위 유형 • 피보험자격 취득-상설 허위신고(위장고용, 해고 등) • 이직사유 허위 기재 • 취업서실 은닉,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• 확정된 취직 또는 가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	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반환 및 추가징수)과 형시 주요 부정행위 유형 피보험자격 취득-상실 허위신고(위장고용, 해고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사실 은닉,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	변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I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I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.등) "임시저장"과 "다음" 순서대로 클릭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할수 있습니다.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이전 초기화	임시저장 다음